환경부

환 경 부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식품 오인 생활화학제품 자발적 회수 권고 및 안전관리 협조 요청

1. 귀 사업자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.

2. 우리 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해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유통 차단하고 위반제품은제조·수입금지 및 회수명령, 위반사실 공표,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.

3. 최근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용기 또는 형태의 제품 출시로 소비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용기 포장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‘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(환경부)’ 고시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.

<식품 오인 가능 생활화학제품 사례>

소주 모양 방향제	빵모양 방향제	젤리모양 세제

4.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식품 오인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끼칠 위해를 예방하고자 「제품안전기본법」 제10조 따라 **식품오인 가능한 용기 또는 형태의 제품을 제조·수입한 경우 자발적 수거 후 개선조치를 권고**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아울러, 생활화학제품 판매자 및 판매중개자(온라인 플랫폼사업자 등)는 **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생활화학제품을 유통·취급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환 경 부 장 관

수신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·수입자, (사)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표, 대한상공회의소장

환경사무관 **송성욱** 과장 전결 2022. 9. 8. **신건일**

협조자

시행 화학제품관리과-998 (2022. 9. 8.) 접수

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화학제품관리과(6동 730호) / http://me.go.kr

전화번호 044-201-6809 팩스번호 044201 / sungukie@me.go.kr / 대국민 공개